

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2026년~2027년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

2. 목 적

본 용역은 국제성모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(종합) 용역으로써 소방시설관리 전문인력을 통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·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소방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유사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3. 용어의 정리

본 용역에 관하여 국제성모병원을 “병원”이라 칭하고, 용역대행업체를 “계약상대자”라 칭한다.

4. 과업 대상

- 가. 건축물명 :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
- 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
- 다. 건축물 개요

연면적(m²)	층 수	사용승인일
104,633.65	지하6/지상11	2024. 1. 16.

라. 소방시설 종류

소화설비	○소화기구 ○옥내·외소화전설비 ○스프링클러설비 ○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
경보설비	○비상방송설비 ○자동화재속보설비 ○가스누설경보기 ○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
피난설비	○피난기구 ○유도등 ○인명구조기구 ○비상조명등
소화용수설비	○상수도소화용수설비
소화활동설비	○연결송수관설비 ○비상콘센트설비 ○제연설비 ○무선통신보조설비
기타	○방화문 ○방화셔터 ○방염

5. 계약 기간 : 2026년 1월 2일부터 2027년 11월 30일 까지

6. 과업 범위

- 가.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: 2026년~2027년 종합점검 상반기(1월), 하반기(7월) / 총4회
- 나. 점검인력은 5인 기준으로 점검기간을 10일(토요일 1일 포함)로 실시한다.
- 다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

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한다.

라. 해당 자체점검이 완료되면 점검결과 보고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」 제13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와 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 제8조에 따른 표본조사가 병원에 발생 시 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
바.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 연장여부는 당사자들 간 합의 하에 결정한다.

7. 과업 수행 업체자격

가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의한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
나.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경력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, 보조인력 4명을 한 개의 조로 구성하여 5명이 계약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8.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

가.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공정표, 점검장비 및 투입되는 점검자에 대한 자격,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점검에 착수하여야 한다.

-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점검인력 배치계획 1부
- 점검인력 재직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증권 1부
- 기타 관련 증빙서류

나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병원에 건의하여 사전 해결하여야 한다.

다.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점검 중 제반 인적·물적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·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병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라.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참여 인원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. 또한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, 참여인원의 안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,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비용과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마.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한을 가지며 지시사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바. 감독관은 해당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관련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사.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병원의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인적·물적 피해(손상, 부상, 사망, 도난 및 손실로 인한 직·간접비용 등)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.

- 아. 계약상대자는 ‘사’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의2 기준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자.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본 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 또는 기구일체를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차.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 시 보안 및 감염관리에 대한 병원 방침을 따른다.

9. 계약의 해제 및 해지

-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가. 계약상대자가 해산, 청산,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
 - 나.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
 - 다.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병원을 비방하여 병원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경우
 - 라.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
 - 마. 계약기간 중 병원의 재산을 소유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하거나 절취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
 - 바.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(단, 병원은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.)
 - 사. 본 용역 수행 시 병원의 정당한 지시를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

10. 점검결과 등의 보고

- 가.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(종합)을 완료 후 점검결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병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,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병원에게 보관용 및 소방서 제출용 등 2부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관할소방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병원이 실시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병원의 위임장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.